의안번호	2219342
의 뢰 인	박대출의원
회 답 일	2026.10.8.
추계번호	26D291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 1일 연장, 사전투표제도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도 도입,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02억 2,800만원, 2030년 993억 9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,496억 2,400만원(연평균 299억 2,5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	합계	연평균
선거일 1일 연장 (안 제34조 등)	-	44,444	-	92,594	-	137,038	27,408
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 (안 제148조제1항)	-	5,784	-	6,802	-	12,586	2,517
합계	-	50,228	-	99,396	-	149,624	29,925

주: 1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, 선거일 1일 연장(안 제34조 등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며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(안 제148조제1항)은 재량규정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2. 본 추계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1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, 재외선거, 보궐선거는 제외하기로 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존 사전투표제도에서 명칭 변경 이외에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재정수반요인은 아래와 같음			
1	안 제34조(선거일)·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	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,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현행 수요일 1일에서 금요일과 그 다음 날 2일로 1일을 연장	의무규정
2	안 제37조의2(부재자투표신고) 신설	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(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)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·시·군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,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	의무규정
3	안 제148조제1항(부재자투표소의 설치)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학 밀집지역을 추가	재량규정
4	안 제171조의2(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) 신설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두고,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4조(선거일)·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	○	-
2	안 제37조의2(부재자투표신고) 신설	X	부재자투표신고 인원, 평균 등기우편 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148조제1항(부재자투표소의 설치)	○	-
4	안 제171조의2(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) 신설	X	현행법에 따른 개표소의 축소 운영 여부, 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한 투표소의 확대 운영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'선거일 1일 연장', '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'에 한정하여 추계

○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1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, 재외선거, 보궐선거는 제외

○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부재자투표제도로 변경되는 경우, 현행 사전투표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,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❑ 본 추계에서는 선거일 1일 연장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항목을 투표소 사례금,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,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으로 한정하여 추계

○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「2024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」를 활용하여 투표관리 관련 내역에서 선거일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도출

❑ 본 추계에서는 대학 밀집지역을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서 19~30세 인구비율이 동일한 연령대의 전국 평균(13.1%)보다 1.5배 높은 읍·면·동 지역으로 가정

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[1)]

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선거일 1일 연장(안 제34조 등)

❑ 개정안은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1일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여 투표소 사례금,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,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에서 추가재정소요 예상

❑ 본 추계에서는 직전 공직선거별 투표소 수, 투표관리요원 인원,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된 차량 및 보조인 수에 각 항목별 단가, 1일을 곱하여 산출

○ **(투표소 사례금)** 2028년 14억 2,600만원, 2030년 28억 7,600만원으로 추정

- 직전 공직선거별 투표소 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(2022년 제8회) 14,465개소, 국회의원선거(2024년 제22대) 14,259개소, 대통령선거(2025년 제21대) 14,295개소
- 투표소 사례금은 1일 기준 1개소당 1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1%	2.3%	2.0%	2.0%	2.0%	2.0%	2.0%

[표 2] 투표소 사례금 추정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
투표소 수(a, 개소)	–	14,259	–	28,760	–
1개소당 사례금(b, 만원)	–	10	–	10	–
추가재정소요 (=a×b×1일, 백만원)	–	1,426	–	2,876	–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○ **(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)** 2028년 427억 7,200만원, 2030년 892억 2,600만원으로 추정

– 투표관리요원은 투표관리관, 투표사무원, 투표참관인으로 구분되며, 1일 기준 수당은 각각 19만원, 13만원, 10만원이고 식대는 21,000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

[표 3]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추정: 2027~2031년

구분	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
인원 (a, 명)	투표관리관	–	14,259	–	28,760	–
	투표사무원	–	125,295	–	317,272	–
	투표참관인	–	172,253	–	291,324	–
수당과 식대 (b, 원)	투표관리관	–	211,000	–	211,000	–
	투표사무원	–	151,000	–	151,000	–
	투표참관인	–	121,000	–	121,000	–
추가재정소요 (=a×b×1일, 백만원)	투표관리관	–	3,009	–	6,068	–
	투표사무원	–	18,920	–	47,908	–
	투표참관인	–	20,843	–	35,250	–
	합계	–	42,772	–	89,226	–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○ **(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)** 2028년 2억 4,600만원, 2030년 4억 9,200만원으로 추정

– 2024년 국회의원선거(제22대) 시 장애인 이동차량 수 및 활동보조인 인원,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인원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

– 장애인 이동차량 504대, 활동보조인 504명, 교통편의차량 동승원은 1,200명이고 1일 기준 사례금은 장애인 이동차량 20만원, 활동보조인과 동승원은 85,000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

[표 4]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 추정: 2027~2031년

구분	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
수량 (a, 대, 명)	장애인 이동차량	–	504	–	1,008	–
	활동보조인	–	504	–	1,008	–
	교통편의차량 동승원	–	1,200	–	2,400	–
사례금 (b, 원)	장애인 이동차량	–	200,000	–	200,000	–
	활동보조인	–	85,000	–	85,000	–
	교통편의차량 동승원	–	85,000	–	85,000	–
추가재정소요 (=a×b×1일, 백만원)	장애인 이동차량	–	101	–	202	–
	활동보조인	–	43	–	86	–
	교통편의차량 동승원	–	102	–	204	–
	합계	–	246	–	492	–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을 1일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44억 4,400만원, 2030년 925억 9,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5] 선거일 1일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
투표소 사례금	–	1,426	–	2,876	–
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	–	42,772	–	89,226	–
장애인 등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	–	246	–	492	–
합계	–	44,444	–	92,594	–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(안 제148조제1항)

❑ 개정안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
❑ 본 추계에서는 공직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 대학 밀집지역 156개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○ **(부재자투표소 설치 수량)** 2028년 국회의원선거 156개소, 2030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312개소

-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(2026년 8월 말 기준)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19~30세 연령구간의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(51,084,159명 중 6,692,277명, 13.1%)보다 1.5배 높은 읍·면·동을 산출
- 그 결과, 156개로 추정되었고 본 추계에서는 해당 읍·면·동에 부재자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○ **(1개소당 비용)**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비용은 2028년 3,708만원, 2030년 2,180만원으로 추정

-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설치·운영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「2024년도 예산안 각 목명세서」의 사전투표관리 관련 비용항목을 추출·집계한 1개소당 1,928만원(2024년 기준)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[2)]
- 다만, 최초 실시 선거연도인 2028년에만 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 1,613만원(2028년 기준)을 추가[3)4)]

[표 6]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비용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
1개소당 설치·운영비용	2,054	2,095	2,137	2,180	2,223
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	–	1,613	–	–	–
합계	2,054	3,708	2,137	2,180	2,22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설비·물품 177만원, 인건비(수당·식대·여비) 864만원, 임차·사용료 26만원, 통신 85만원, 우편·회송 491만원, 장비운영·유지 283만원, 기타 2만원으로 선상·거소투표 및 재·보궐선거분은 제외한 금액

3) 사전투표소 설치 첫해에는 본인확인기, 투표용지발급기 등 사전투표운용장비 제작이 필요하며, 내구연한(5년 정도)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중 최초 실시 선거연도인 2028년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4)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내역에 따르면 본인확인기(2022년, 17,062대 187억 811만원)와 투표용지발급기 등(2023년, 17,062대 321억 200만원)의 1대당 단가는 각각 약 110만원, 188만원이고, 1개소당 장비대수(각 4.8대)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7년 기준 1개소당 1,581만원(본인확인기 595만원, 투표용지발급기 등 986만원)으로 추정

❑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7억 8,400만원, 2030년 68억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7] 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
수량(A, 개소)	–	156	–	312	–
1개소당 비용 (B, 만원)	–	3,708	–	2,180	–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–	5,784	–	6,802	–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02억 2,800만원, 2030년 993억 9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,496억 2,4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	합계
선거일 1일 연장	–	44,444	–	92,594	–	137,038
대학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	–	5,784	–	6,802	–	12,586
합계	–	50,228	–	99,396	–	149,62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선거일 연장 시 재외선거,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읍·면·동 기준 인구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